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0. 10. 25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. 10. 7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0. 10. 8

다. 상정일자 : 제15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10. 10. 25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김 석 원 교통행정과장

가. 제안이유

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등 명칭 변경과 자전거로 인한 국민의 안전과 불의 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 등을 명시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1) “주민자전거”를 “공공자전거”로 명칭을 변경(안 제2조)
- 2) 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 (안 제5조)
- 3)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매년 4월22일을 자전거의 날로 규정(안 제14조)
- 4) 자전거 이용 국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6조)
- 5) 기타 「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따른 용어순화 및 일부표현 정비

3. 검토보고 (신승관 전문위원)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09. 12. 29일 법률 제9844호로 개정되고, 2010. 6. 30일 시행됨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자전거의 날을 정함과 함께 자전거로 인한 국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,

○ 조례 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

안 제5조에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정비하고,

안 제14조에서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정하는 등 법령과 불합치 되는 부분을 정비하고

안 제16조에 자전거로 인한 국민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바, 가입예정 자전거보험은 우리구 전체 주민 380,000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1인당 400원씩 약 1억 5천 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, 소요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충당될 예정이고,

자전거 보험의 주요내용은 국민들이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사망, 후유장애, 일정기간 입원 또는 진단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또한 사고로 인한 형사상의 벌금, 방어비용, 형사합의 지원금 지원 등이 자전거보험의 주요내용이 되는바,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시 우리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 사료되며,

또한 제명 등 각종 용어를 법제처에서 기준을 정한 「알기 쉬운 법령」 정비 기준에 맞게 문구를 보완·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8. 기 타 : 없음